



Tax newsletter

2026년 세제개편안

forv/s
mazars



세법 업데이트

2026년 세제개편안

기획재정부는 2026년 8월 3일에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기업 투자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전략기술 연구개발(R&D)과 국내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였으며, OECD 글로벌 최저한세 행정지침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8월 중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조세 소위 심의 및 본 회의를 거쳐 12월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아래 소개하는 주요 내용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법 업데이트

법인 관련 개정안

국내생산 세액공제 신설

국내생산 세액공제 요건 및 적용 기한(조특법 § 29①)

현행	개정안
<신설>	국내생산 세액공제 요건 및 적용 기한 (요건) 내국인이 적격 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 (국내생산) 1+2 - 핵심 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하고, 적격 생산 비용 중 국내 지출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것* * 핵심공정, 적격 생산 비용, 국내 지출 비중 등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이 통합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않을 것 *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국내판매) 1~4 모두 충족 - 공급장소가 국내일 것* * 공급받은 품목이 수출되는 경우 등 제외(세부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 생산된 과세연도 또는 다음 과세연도에 판매될 것 - 판매 상대방이 특수 관계인인 경우 사업목적으로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 중고품이 아닐 것 (적용기한) '36.12.31.

<개정이유> 국내생산 취약품의 국내생산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 분부터 적용

세법 업데이트

법인 관련 개정안

국내생산 세액공제 요건 및 적용 기한(조특법 § 29②)

현행	개정안
<신설>	① 중요성, ② 유망성, ③ 필요성을 모두 충족하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및 인공지능로봇 부품 분야의 품목* * 세부 품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1. 녹색 전환 및 경제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 2. 현재 수익성이 부족하나 시장 전망 및 기술 발전 속도 등 감안 시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킬 필요 3.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하고, 투자금액 대비 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며, 국내 시장 수요로 수익성 확보 가능

<개정이유> 국내생산 취약품의 국내생산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 분부터 적용

세법 업데이트

법인 관련 개정안

R&D, 투자 세제지원 지방 우대(조특법 § 10· § 24)

현행	개정안										
<신설>	공제율 지방우대: 기준 공제율* x 지방우대계수 * (현행) R&D 세액공제(2~40%),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1~30%) • 지방우대계수 <table> <tr> <th>구분*</th><th>계수</th></tr> <tr> <td>① 수도권</td><td>1.0</td></tr> <tr> <td>② 비수도권 광역시 등, 수도권 우대지역</td><td>1.1</td></tr> <tr> <td>③ 기타 비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td><td>1.3</td></tr> <tr> <td>④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td><td>1.5</td></tr> </table> * 비수도권 광역시 등 및 우대 지역의 세부 지역 구분은 행정안전부 지방우대지수(서울과의 거리, 인구 및 경제·사회여건 등 반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공제율 한도) 50% • (지역별 구분경리 의무화) 지방우대적용을 위해 ①~④ 지역 사업장별 구분경리	구분*	계수	① 수도권	1.0	② 비수도권 광역시 등, 수도권 우대지역	1.1	③ 기타 비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	1.3	④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
구분*	계수										
① 수도권	1.0										
② 비수도권 광역시 등, 수도권 우대지역	1.1										
③ 기타 비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	1.3										
④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R&D 비용 발생 또는 투자 분부터 적용

세법 업데이트

법인 관련 개정안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대상 합리화 등(조특법 § 29의8①·⑤)

현행						개정안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대상 합리화 등					
• (지원대상별 공제액)						• 대기업 제외					
공제액 (1인당, 만원)		대	중견	중소		공제액 (1인당, 만원)		대	중견	중소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일반	1년차		300	400	700	일반	1년차		300	400	700
	2년차		500	900	1,200		2년차		500	900	1,200
	3년차		500	1,000	1,300		3년차		500	1,000	1,300
우대	1년차	300	500	700	1,000	우대	1년차		500	700	1,000
	2년차	500	900	1,600	1,900		2년차		900	1,600	1,900
	3년차	-	900	1,700	2,000		3년차		900	1,700	2,000
*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근로자 등 • (적용기한) ’28.12.31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 공제) • (대상) 중소·중견기업 •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육아휴직자 복직 •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 또는 증가 (공제액) 복귀자 1인당 중소기업 1,300만 원, 중견기업 900만 원 (적용기한) ’26.12.31.						* (좌 등) • (좌 등) 적용 기한 종료* * ’27년 행복한 일터 인증제(노동부) 시행 시 관련 세제지원 신설 예정					

<개정이유> 세제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세법 업데이트

법인 관련 개정안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법인령 § 94①)

현행	개정안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 •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 소득 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추가 >	적격소재국추가세액* 포함 * 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특정국가내에서 어떤 다국적 기업 그룹의 구성 기업들이 최저한세율(15%) 미만으로 저율과세 되는 경우, 그 저율과세분을 해당 국가가 추가로 과세 • (좌 동) • 적격소재국추가세액

<개정이유> OECD 글로벌 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외국법인과 의 용역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규정 보완(부가령 § 95)

현행	개정안
대리납부* 적용 대상 국외사업자 * 국외사업자가 국내에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 (면세사업자)가 납부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 단서 시설 >	관련성 규정 보완 • (좌 동) 국내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국내사업장과 관련 있는 것으로 규정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용역 등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세법 업데이트

법인 관련 개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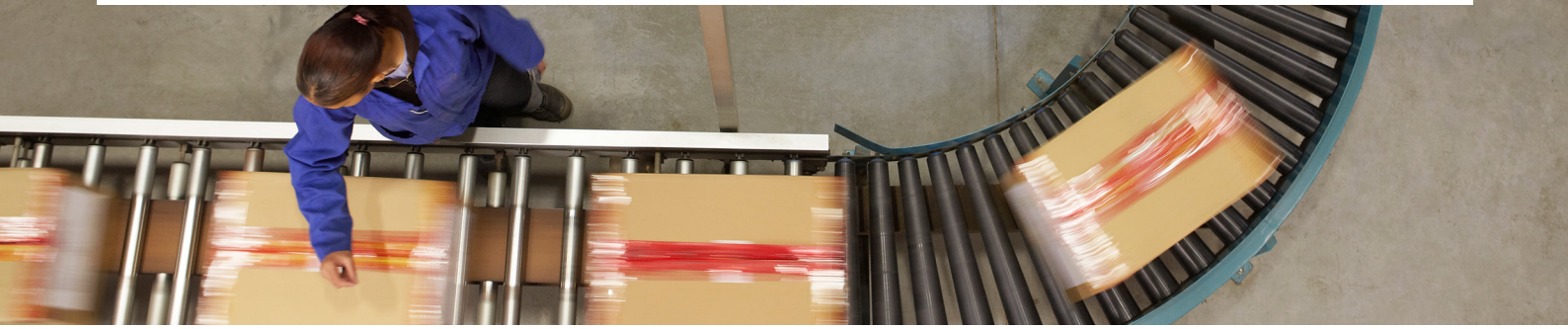
외국자회사 적격분할시 내국법인인 모회사 의제배당 과세이연 (법인령 § 14)

현행	개정안
<신설>	해외자회사 분할시 내국법인이 받는 주식(의제배당)에 대한 과세이연 • (분할 범위) 1 또는 2 1. 인적 분할 2. 분할법인이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모두 주주에게 분배하는 분할 •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외국법인의 분할* * 독립 가능한 사업 부분의 분할로서 자산·부채를 포괄적 승계 • 내국법인이 완전 지배하는 외국법인의 분할 •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설립된 외국법인 • 내국법인이 외국 자회사 분할로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해 외국에서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 • (과세이연) 취득주식 등을 종전 장부가액으로 승계

<개정이유> 해외자회사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세법 업데이트 개인 관련 개정안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소득세 세율 상향 조정 등(조특법 § 18의2)

현행	개정안
외국인 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 • (특례) 19% 단일세율* 적용 * 종합소득세율(6~45%) 선택 가능 •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 (기간) 국내 근무 시작일부터 20년간 • (적용 기한) '26.12.31.	• 적용세율 상향 및 적용 기한 연장 • 19% → 21% • (좌 동) • (좌 동) • '29.12.31.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세법 업데이트

국제 조세 관련 개정안

특정외국법인(CFC) 판정기준 합리화(국조법 § 27)

현행	개정안
특정외국법인(“CFC”) *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 * CFC (Controlled Foreign Company) • (개요) 내국인이 저세율국에 설립한 CFC의 유보소득을 내국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 (요건) 1~4 모두 충족 1. (실효세율(A) 기준) : $A \leq \text{법인세최고세율}(25\%) \times 70\% = 17.5\%$ $*A = \frac{\text{외국법인 실제부담세액}}{\text{외국법인 실제발생소득}}$ 2. (지배) 내국인과 CFC가 특수관계* *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간접 보유 등 3. (소유) 내국인이 CFC 주식의 10% 이상 직·간접 소유 4. (사업 활동) 고정 시설과 인력 없이 실질적인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등	실효세율 판정 기준 완화 • (좌 등) 1. 글로벌최저한세와 동일 수준으로 조정 : $A < 15\%$ • (좌 등)

<개정이유> CFC 판정 기준을 글로벌 최저한세 수준으로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세법 업데이트

국제 조세 관련 개정안

글로벌최저한세 개편방안(Side-by-side package) 반영

병행체계(Side-by-side system) 적용면제 신설(국조법 § 80⑤)

현행	개정안
<신설>	병행체계 적용 면제 • (요건)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종 모기업이 적격병행체계*를 갖춘 국가에 소재 * ① 적격국내조세제도 보유 ② 적격해외조세제도 보유 ③ 적격소재국추가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공 • (효과) 해당 다국적기업 그룹 구성 기업의 소득산입규칙 ·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 (적용 사업연도) • '25.12.31. 이전 적격국내·해외조세제도를 입법해 적격병행체계로 인정받은 국가: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26.1.1. 이후 적격병행체계로 인정받은 국가: 해당 인정받은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정이유> OECD 글로벌 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7.1.1. 이후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신고서 또는 추가 세액 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최종 모기업 적용면제 신설(국조법 § 80⑥)

현행	개정안
<신설>	최종 모기업 적용 면제 • (요건)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종 모기업이 적격국내조세제도*를 갖춘 국가에 소재 * ① 명목세율 20% 이상 ② 실효세율 15% 이상 최저한세제도 보유 등 • (효과) 해당 최종 모기업 소재국에 소재한 구성 기업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 세액을 '0'으로 간주 • (적용 사업연도)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정이유> OECD 글로벌 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7.1.1. 이후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신고서 또는 추가 세액 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세법 업데이트

국제 조세 관련 개정안

실질기반 적용면제 신설(국조법 § 80⑦, 국조령 § 138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실질기반 적용 면제 - 적격 실질기반 조세 혜택으로 인한 대상조세 감소분은 대상조세에서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추가세액·내국추가세액 계산 적격 실질기반 조세 혜택 (정의) 지출·생산 기반으로 산정된 조세혜택 (예시) 기업의 지출액*, 재화 등 생산량**의 일정 비율 기준으로 세액 공제 * 연구개발, 유형자산 취득 비용 등 ** 관할권 내 생산된 제조 활동 산출물, 채굴·정제 산출물 등 (계산) 유형별로 조세 혜택 대응액 산정 (세액공제) 대상조세를 감소시킨 세액공제액 (초과 손금산입) 초과 손금산입금액 x 법인세율 (소득면제/우대세율*) 면세소득 x 법인세율 * 우대세율 적용시: 우대소득 x (법인세율 - 우대세율) (한도) Max (적격인건비, 적격유형자산 감가상각비) x 5.5% - 다만, 5년 선택시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 x 1% (적용 사업연도)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정이유> OECD 글로벌 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7.1.1. 이후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신고서 또는 추가 세액 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세법 업데이트

국제 조세 관련 개정안

간이실효세율 적용면제 등의 추가세액 면제 범위 보완(국조법 § 80④)

현행	개정안
간이실효세율 등 적용 면제 (요건)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면제 요건* 충족 * ① 소액, ② 실효세율 15% 이상, ③ 초과이익 일정 기준 이하 * 세부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예정 (효과) 해당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내국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단서 신설>	추가세액 등 범위 조정 (좌 동) (좌 동) - 추가세액·내국추가세액에 당기 추가세액가산액*·당기 내국추가세액 가산액이 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은 '0'으로 간주하지 않음 * 이전 사업연도의 실효세율이 다시 계산되어 추가로 발생하는 가산금액

<개정이유> OECD 글로벌 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7.1.1. 이후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내국추가세액 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간이실효세율 적용면제 신설(국조령 § 138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간이실효세율 등 적용 면제 (요건) 사업연도의 개시일 직전 24개월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국가 내 다국적기업 그룹의 추가세액·적격소재국 추가세액 미발생 (효과) 해당 국가에 대해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조정대상 조세 대신 간이소득·간이세액을 사용해 실효세율 계산 가능 - 간이실효세율 $\geq 15\%$이거나 간이소득 ≤ 0인 경우, 추가세액·내국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적용 사업연도) '26.12.3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정이유> OECD 글로벌 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 배분액·내국추가세액 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세법 업데이트

국제 조세 관련 개정안

소득산업보완규칙 적용면제 적용기간 보완(국조령 § 138⑥)

현행	개정안
소득산업 보완규칙 적용 면제 적용 기간 '25.12.31. 이전에 개시하고 '26.12.30. 이전에 종료하는 각사업연도	52~53주 사업연도* 채택 기업도 적용 가능하도록 보완 * 1역년이 아닌 52주 또는 53주를 1사업연도로 하는 경우 '25.12.31. 이전에 개시하고 '27.1.3.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개정이유> OECD 글로벌 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국제거래 자료 제출 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 대상 명확화 (국조법 § 87, 국조령 § 144)

현행	개정안
국제거래 자료 제출 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 대상 기한 내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 제출 <추가>	부과대상 명확화 (좌 등) - 중대한 누락 사항이나 오류가 있는 자료 제출 포함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대상 명확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국기법 § 85의5)

현행	개정안
명단 공개 대상 -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하여 가중 처벌된 자 - 조세포탈범(조세포탈, 면세유 부정 유통 및 가짜 석유 판매에 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포탈 세액이 연간 2억 원 이상) - 해외 금융 계좌 정보 신고의무 위반 관련 과소신고 금액 50억 원 초과인 자	명단 공개 대상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범위 확대 (좌 등) - 과소신고 금액 30억 원 초과인 자

<개정이유> 명단 공개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 시기> '27.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Tax newsletter'는 한국의 포비스 마자르(세빛회계법인)에서 발행합니다. 이 발행물은 고객사에게 한국 내 세무에 대한 최신 정보와 개정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비스 마자르 및 한국의 포비스 마자르는 'Tax newsletter'의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포비스 마자르는 본 정보와 자료의 정확성, 적합성, 신뢰성 또는 완전성을 보증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정보와 자료의 오류나 누락에 대한 책임을 명시적으로 부인합니다.

Contacts

이정민

대표이사, 감사 총괄 및 컨설팅
한국의 포비스 마자르 | 새빛회계법인
jung-min.lee@forvismazars.com

박승하

부회장, 세무
한국의 포비스 마자르 | 새빛회계법인
seung-ha.park@forvismazars.com

이기수

파트너, 세무
한국의 포비스 마자르 | 새빛회계법인
ki-soo.lee@forvismazars.com

줄리앙 에르보

리드 파트너, 아웃소싱 및 국제 데스크
한국의 포비스 마자르 | 새빛회계법인
julien.herveau@forvismazars.com

정상안

파트너, 세무 총괄
한국의 포비스 마자르 | 새빛회계법인
sang-an.jeong@forvismazars.com

Forvis Mazars Group SC는 선도적인 글로벌 전문 서비스 네트워크인 Forvis Mazars Global의 독립 회원사입니다. 감사, 세무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국제 통합 파트너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40,0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전문성과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비즈니스 성장의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포비스 마자르 새빛회계법인은 Forvis Mazars Group SC의 독립 회원사로서 12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회계감사, 세무, 자문,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며, 글로벌 네트워크의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26년 8월

forvismazars.com/kr

forv/s
mazars